

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품질인증 수수료(제11조 관련)

1. 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
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
가.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(제품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를 포함한다) 신청
수수료: 건당 230만원

나.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: 건당 115만원

다. 제10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: 건당 230만원

2. 현장심사 수수료

가. 출장비

- 1) 금액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여비에 상당한 금액
- 2) 1건당 1일을 기준으로,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하고,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.

나. 심사수당

- 1) 금액: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해당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임금단가(둘 이상의 기술부문에 관련된 경우 관련 기술부문별 임금단가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)
- 2)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하며,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.
- 3)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
다.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책임인 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.